

##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1. 25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1

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적용할 건축법, 주택건설촉진법, 주차장법, 도시계획법 적용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,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10분의 8로 함. 다만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9로 함.
-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함. 다만,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함.
-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(주거용 건축물에 한함) 및 부동산 등기(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함)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함.
-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.
-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매각규모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.5배 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,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

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는 추가로 매각가능하도록 함.

-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, 주택건설촉진법, 주차장법, 도시계획법등의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의 「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준칙」안을 준용하여 특례적용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### 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### 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